

### 경운대학교 교육운영공동체(2WINNER)에관한규정

**제1조(목적)** 경운대학교는 산업군의 핵심수요를 반영하고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운대학교 교육운영공동체(이하 “교육운영공동체(2WINNER)”)라 한다를 둔다.

**제2조(정의)** 교육운영공동체(2WINNER)는 [WIN+WIN=2WIN:상생], [iNdustry:현장], [Education:교육], [Relationship:관계]를 의미하며 교육과정의 설계·심의·의결·운영·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고 학생의 사회진출을 연계하는 조직이다.

**제3조(교육운영공동체 등)** ① 교육운영공동체(2WINNER)는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로 구분한다.

② 교육운영공동체(2WINNER)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을 총괄하고 상호지원을 협의하며, 경운대학교 교육과정을 심의 및 결의한다.<개정 2016.09.01.>

③ 교육운영공동체(2WINNER) 실행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을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며,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3.01.>

④ 학부(과) 교육운영공동체(2WINNER) 실행위원회는 전공능력 기반 학부(과)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,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된다. <개정 2016.09.01., 2020.03.01.>

**제4조(조직)** ① 교육운영공동체(2WINNER)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위원은 교무위원 과 산·학·관·연 외부위원 등을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된다.<개정 2017.09.01.>

② 교육운영공동체(2WINNER)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우리대학교 교학처장이 당연직으로 하고, 위원은 전임교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0.01.>

1. 항공산업분야
2. 사회안전분야
3. 간호·보건분야
4. 융합과정분야
5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

③ 학부(과) 교육운영공동체(2WINNER)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부(과)장이 되고, 위원은 학부(과) 교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.

④ 삭제<2019.03.01.>

⑤ 교양교육2WINNER실행위원회 위원장은 벽강교양대학장이 되고, 위원회의 세부사항은 「교양교육2WINNER실행위원회규정」으로 정한다.<신설 2020.03.01.>

⑥ 비교과과정 분야 실행위원회는 비교과 프로그램 분류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, 다음 각호와 같다. <신설 2020.03.01., 2021.10.01.>

1. 학습역량강화2WINNER실행위원회: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규정에서 정한 학습역량강화 위원회로 같음
2. 대학생활2WINNER실행위원회: 대학생활지원센터운영규정에서 정한 대학생활지원위원회로 같음
3. 진로취창업2WINNER실행위원회: 취업지원센터운영규정에서 정한 진로·취창업지원위원회로 같음
4. 학생심리상담2WINNER실행위원회: 학생상담센터규정에서 정한 학생심리상담지원위원회로 같음

⑦ 글로벌2WINNER실행위원회 위원장은 국제교육원장이 되고, 위원회의 세부사항은 「글로벌2WINNER실행위원회규정」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03.01., 2021.09.01.>

**제5조(운영위원회)** ① 교육운영공동체(2WINNER)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결의한다.<개정 2016.09.01.>

1. 교육과정(교과 및 비교과과정) 기본계획
2. 교육과정(교과 및 비교과과정) 편성 및 운영계획
3. 강의개선 기본계획
4. 기타 총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
**제6조(분야별 실행위원회)** 교육운영공동체(2WINNER)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교과과정 분야별 운영성과분석 및 개선안 심의
2. 연계·융합전공 운영성과분석 및 개선안 심의
3. 연계·융합전공 교과과정 계획을 위한 공동참여
4. 기타 교과과정 운영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전문개정 2020.03.01.]

**제7조(학부(과) 실행위원회)** 학부(과)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<개정 2020.03.01.>

1. 학부(과) 교육과정(교과 및 비교과과정) 편성 및 운영계획
2. 학부(과) 교육과정(교과 및 비교과과정) 운영 결과
3. 학부(과) 교과목CQI보고서 분석 및 강의평가 결과분석
4. 전공능력 기반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계획
5. 학부(과) 교육과정 개선
6. 학부(과)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공동참여
7. 기타 학부(과) 교육과정 전반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(회의)**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** 삭제 <2019.03.01.>

제10조(위원회 사무) 교육운영공동체(2WINNER) 사무는 산학연구처에서 관장한다.  
<개정 2021.10.01.>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5월 26일자로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자로 시행한다.

**부 칙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.

**부 칙<2019.09.01.>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.

**부 칙<2020.03.01.>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적용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<2021.10.01.>**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